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84호 2015. 2. 25.(수)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15-177호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84호(2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5 - 177호

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2월 25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개정함

- 「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→ 「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

나. 위원회 기능 추가(안 제2조)

-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심의
-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

사 천 시 공 보

제384호(3)

다. 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회의 위원장을 “부시장”에서 “민간위원 중에서 호선”하도록 함
-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

라. 위원의 임기(안 제4조)

-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

마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행정정보/법무행정종합정보/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기획예산담당관)

(우편번호 : 664-701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2223, 팩스 : 831-6011)